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69
----------	-----

2015년 6월 2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6월 17일, 전철수 의원 외 18명
-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8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5년 6월 24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전철수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2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며,
- 차 없는 날 행사를 활성화하여 교통수요 관리 및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안 제3조)
-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고,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도로교통법」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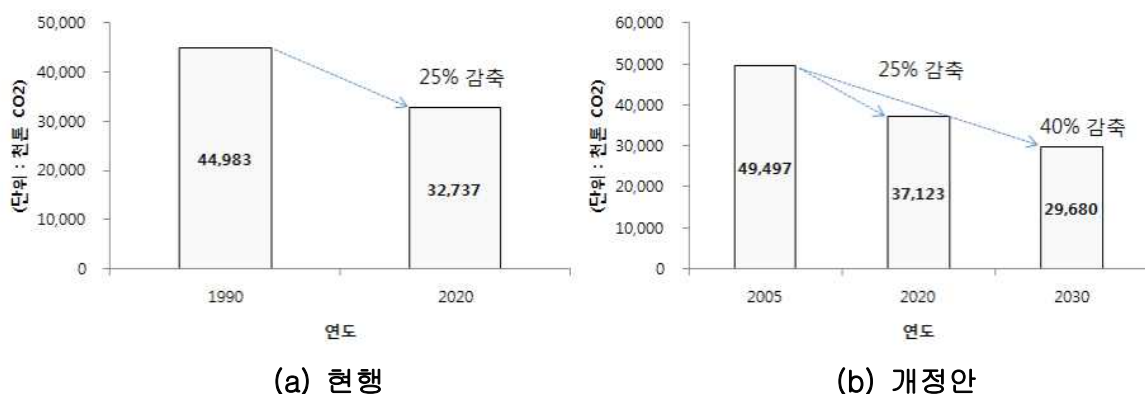
###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2030년도까지의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현실적으로 변경하고,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를 활성화하여 교통수요 관리, 자원순환 촉진,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제3조제2항)

- 서울시에서는 2007년 4월‘서울친환경 에너지 선언’을 통해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 기준 25% 줄이는 등의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목표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그림 1> 온실가스 감축목표

-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 이클레이(ICLEI)총회에서“서울의 약속”을 대내외에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40% 감축하는 것을 수정 제시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음.

## 2)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 운영 (안 제24조)

- 「차 없는 날」 행사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에너지 낭비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고 녹색교통 이용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청정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매년 9월 22일을 전후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 1〉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 운영 실적(2014년)

구 분	시 기	장 소	행사주관	행사명	차량통제
서울시	2014.09	광화문일대 (시청~광화문삼거리)	시민공모21개 단체 등	2014 서울 차없는 날	부분통제
서대문구	연중	신촌전철역~연세대 앞(470m)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50개 단체	신촌 차없는 거리	전면통제
마포구	매주 토, 일	홍대입구역~국민은행 서교통지점(520m)	추진위원회	홍대 차없는 거리	전면통제
도봉구	2014.11	지운초교후문~도봉아 나라도서관	창4동 함께Green 마을만들기 추진단	창4동 시끌벅적 마을축제	전면통제
성북구	2014.04	성북동길	환경과	지구를 위한 성북구민 행동의 날	부분통제
	2014.10	아남아파트~생명의전 화종합사회복지관(320m)	나눔한마당 잔치 추진위원회	월곡1동 나눔한마당잔치	부분통제 (1개차선통행)
	2014.06	동덕여대5거리~동덕여 대정문(100m)	월사모	효 잔치	전면통제

- 안 제24조는 차 없는 날 행사를 활성화 하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도심지역에서의 자동차운행 억제, 온실가스감축, 자원순환 등과 관련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으나,
  - 차 없는 날을 위한 자동차의 통행제한은 지방경찰청 권한을 침범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일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3조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 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2.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수요관리, 4.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5.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6. 원격(遠隔) 근무와 재택(在宅) 근무 지원, 7.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8.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4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대상지역, 자동차의 종류·용도·사용목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와 「도로교통법」 제6조에는 운행제한 주체가 서울시와 지방경찰청장으로 되어 있어, 동 조례의 근거만으로 자치구에서 자동차 운행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 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서 조항 추가가 필요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69
----------	-----------

제안년월일 : 2015년 6월 24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와 「도로교통법」 제6조에는 운행제한 주체가 서울시와 지방경찰청장으로 되어 있어, 동 조례의 근거만으로 자치구에서 자동차 운행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 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임.

## 2. 주요 골자

-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치도록 함. (안 제24조제2항)

## 3. 참고사항: 생략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 및 자치구는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야 한다.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온실가스 감축목표)</p> <p>① (생략)</p> <p>② 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25퍼센트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	<p>제3조(온실가스 감축목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40퍼센트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	<p>제3조(온실가스 감축목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24조(차 없는 날)</p> <p>① (생략)</p> <p>② 시는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차 없는 날을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p>	<p>제24조(차 없는 날)</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 및 자치구는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p>	<p>제24조(차 없는 날)</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 및 자치구는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p>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40퍼센트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 및 자치구는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온실가스 감축목표)</p> <p>① (생 략)</p> <p>② 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25퍼센트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	<p>제3조(온실가스 감축목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40퍼센트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
<p>제24조(차 없는 날)</p> <p>① (생 략)</p> <p>② 시는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차 없는 날을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영을 억제할 수 있다.</p>	<p>제24조(차 없는 날)</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 및 자치구는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영을 억제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야 한다.</p>